

의·학·상·식

포천의료원 이비인후과장 정영호



되는 치료방법으로 이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을 찾아 그 물질을 희석해 체내에 서서히 증량하면서 투여함으로써 그 물질에 대한 면역능력 증강시키는 것이다.

본원에서는 지난 1986년 5월부터 알러지클리닉을 개설해 알러지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을 정확히 찾아내 이에 적합한 치료를 하고 있으며 특히 면역수축제와 함께 복용한다. 이에도 효과가 없을 때는 부신피질 호르몬제제를 사용한다.

이상과 같은 알레르기성 비염은 병의 특성상 완치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끈기를 가지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포천의료원(031-539-9114)

알레르기성 비염

〈지난호에 이어〉 알레르기성비염의 진단은 먼저 환자의 독특한 3대 증세 등의 병력과 알러지치를 갖고 있는 가족력이 중요하다. 이런 환자들의 코수를 들여다 보면 그 점막이 창백하면서 부어있고 맑은 분비물이 고여 있다. 가끔 물혹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자 증세와 진찰 소견상 알레르기성 비염이 의심되면 혈액검사와 피부반응 검사를 시행한다. 피부반응검사는 환자의 등이나 어깨, 팔뚝에 피부에 알러지를 유발하는 여러 물질(본원에서는 성인 50 가지,

소아 30 가지)로 피부 반응을 관찰하여 원인을 찾는 것이다. 이의 방사선 검사(컴퓨터 단층촬영이 가장 정확하다.)를 통해 부비동염(축농증)이 동반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본다. 이렇게 해서 원인 물질을 찾아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다. 치료방법에는 1) 회피요법 :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항원)을 제거하거나, 그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엇이 원인이 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치료법이 주로 이용된다. 2) 면역요법(탈감작요법) : 위의 방법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 시도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산업장애 급수는 어떻게 받으며, 보상은 무엇이 있는지요?
A 산재보상보험법 규정에 의하면, 장애급어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서 치유 후 신체에 장애가 남게 되는 경우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장애급어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고 신체에 장애가

잔존하는 경우 장애보상청구서상 주치의의 장애소견과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치료종결 의뢰기관 또는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당해 근로자가 예약된 날짜에 장애보상청구서를 접수받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해 주치의의 장애소견 및 정확한 장애상태에 대한 확인을 위해 장애심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이 결정된다. 산재보상법상 장애급어는 그 등급이 제1급부터 제14등급까지로 되어 있고, 각

등급마다 장애보상일수가 정해져 있다. 장애등급이 정해지면 그 등급의 해당 일수에 평균급금을 곱한 금액이 장애보상일수금이 된다. 그러나 1급부터 7급까지는 장애연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각 등급마다 장애연금일수(1년 기준)가 정해져 있으며, 그 연금일수에 평균급금을 곱한 금액을 12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게 된다. 참고로 다리부위의 장애등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면, 다리부위의 장애등급은 기질적 장애(결손장애, 기형장애, 단축장애)와 기능적 장애로 나누어지고 다리 한 개 관절에 인공관절을 삽입 치환한 경우에는 '다리의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장애등급 제8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의:한국종합노무법인 한솔사무소 공인노무사:강경만 (031-877-7582~3)

한·방·상·식

한의학박사 김홍순



〈지난호에 이어〉두통의 증상 또한 많은 진단적 가치를 나타낸다. 뇌막염일 때 오는 두통은 매우 심하다. 또한 편두통은 폭발적인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혈관성으로 오는 두통(vascular headache)은 박동적(throbbing)으로 나타난다. 즉 맥박과 동일하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반면 근육의 경직으로 발생하는 두통은 빠르고 조이는 것 같이 느껴진다. 신경통의 일환으로 오는 두통(neuralgic pain)은 날카롭게 찌르는 듯하며 척추와 관계 있

현대인은 두통을 안고 산다

는 두통은 번개처럼, 그리고 정신적 원인의 두통은 수천 개의 칼이 머리 속을 찌르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표현한다. 뿐만 아니라 눈이 속 들어오다가 속 밀려 나온다고 하기도 하며 근육의 경직이 원인이 되는 불안, 초조의 상태에서는 띠로 머리를 잡아맨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외에도 간질, 어지럼증과 감별해야 하며 전에 없던 두통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타나면 어떤 병(예: 지주막하출혈 및 뇌종양)이 발생한 것이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한방적 원인 치료로는 △특히 양쪽 눈가 관자놀이 부위가 아프며 기운이 떨어질 때 특히 아픈 기허두통은 조종익기탕 △담결두통: 한방의 독특한 개념인 담음(비생리적액액)의 축적으로 소화기 관내의 불순물이 머리로 올라가는 맑은 기운을 만든다. 미식 미식하고 어지러운 증상 및 팔 다리가 무거운 증상을 동반한다. 처방은 반하백출 첨미탕을 주로 쓴다. △혈허상태에서 빈혈이 동반되고 얼굴색이 창백해지는 혈허두통에는 사물탕 △열이 머리로 치받아서 두통을 일으켜 얼굴이 뜨겁고 발개지며 찬물을 좋아 하면서 열이 많이 나는 열결두통의 처방에는 청상사화탕 △머리에 찬바람을 많이 쐬어서 생기는 풍한두통에는 공지향소산을 쓴다. <끝>

☞문의:포천한의원(031-253-2536)

여·성·상·식

경기가정·성상담센터 이문환



Q 혼인을 앞둔 남성입니다. 자위행위를 심하게 한 편인데 혹 이상이 없을까 조루 증세가 있는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A 현대적 진단 개념으로 보면 조루란 삽입 후 1~2분 이내에 사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사정이 되는, 즉 사정의 조절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개의 남성은 첫 번째 오르가즘을 자위행위나 동정을 통해 경험합니다. 자위행위란 누가 볼까봐 죄의식 속에서 빠르게, 강하게, 오직 사정만을 목표로 행해집니다. 그들은 음경의 감각에만 온 정신을 집중하고 그러다가 몇 초의 오르가즘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남성은 사정을 조루로 시작합니다. 자위는 누구에게 들리지 못한다는 불안과 묘한 흥분상태에서 이루어집

니다. 이런 반복적인 경험이 조루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성행위를 편안하게 느끼고, 사정만을 위한 행위보다는 사랑을 주고받으며 기쁨과 친밀감이 생기면서 서서히 사정이 자연적으로 조절되는 것입니다. 자위행위 자체가 조루의 원인이 된다고나 자위행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도한 자위행위는 정신적인 문제 및 신체적인 후유증(요도손상 및 세균감염, 조루증 및 발기부전, 역행성 사정, 음경골절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운동이나, 취미생활 등 다른 일에 몰두하여 성적 욕망을 발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문의:경기가정·성상담센터 (031-542-3171)

세무상담

공인회계사 송관수



Q 저는 작년(2003년) 7월에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 1채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취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A 현재 저는 상속받은 아파트 외에 살고 있는 아파트가 1채 더 있습니다.

Q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2003년 이전에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계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2003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상속주택 양도에 관한 과세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취득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과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다는 세법규정에 비추어 상속받은지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도 투기성이 없다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서는 안된다는 국세심판소의 심판 결정례가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문의:공인회계사 송관수(02-404-9944)

법률상담

변호사 박문우



Q 저는 2년 전 甲으로부터 포도연구단지 신축공사의 일부를 금 600만원에 하청 받아 2개월에 걸쳐 공사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이 공사대금 500만원을 가지고있어서 영수증에 '공사대금 총 완결'이라는 문구를 넣어주지 않으면 500만원을 지급받겠다고 하므로 하는 수 없이 그 영수증에 '공사대금 총 완결'이라는 문구를 넣어주었는데, 나머지 공사대금 100만원을 메우게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A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을 때에 진정성이 인정되면 합리적인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329조, 1990. 6. 26. 86다카27116). 그러나 위 사안에서와 같이 표시(表意)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 제107조에서 의사표시는 표시자가 진의의 아남을 알고 한 것이라도 상대방이 표시자의 진의의 아남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채권총액이 576,600원이었으나 그 중 36만원을 받으면서 영수증에 [총 완결]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그 '총 완결' 문구는 36만원을 수령하고 그것으로 모든 결제가 끝났다는 것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로 인용 해석되는 것이고,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것으로 알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수증의 작성경위가 그렇게 기재하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기에 공박한 사정 아래서 우선 돈을 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총 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67. 7. 8. 69다563). 그러므로 귀하는 甲에게 교부한 영수증상의 [공사대금 총 완결]이라는 표시가 귀하의 진의의 아남을 甲이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나머지 공사대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통산중개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귀하의 누나와 집주인(매도인)간의 당초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귀하의 누나가 매도인으로 부터 배상금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누나는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박문우변호사 (031-874-1652)

문구·팬시·악세사리·14K·선물 Gift shop 송우점

신세대 유행앨범지 엑센스에서 사무용품, 향수, 패션 악세사리, 시계, 머그컵과 지제류, 딸기류를 전문판매하는 업체로서 고객과 함께 합니다.



가방·인형·지갑 다이어리·케이스 등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롯데리아 송우점에서 터미널 앞으로 이전.”

대표 : 국 승 선 TEL : 031)543-9405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220

